

[일련번호 : 1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자치회관 운영 보고 관련 주민자치회 협의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◆◆동

내 용

1. 업무개요

◆◆동은 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 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 35조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자치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동장은 같은조례 제 3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◆◆동은 감사 대상기간동안 아래표의 같이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과 운영결과보고서를 주민자치회 협의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다.

[표] 주민자치회 감사결과 및 자치회관 운영 결과보고 부적정 현황

연번	연도별	구청장 보고 여부	지적사항
1	2023년	보고 완료	2022년 하반기 운영결과보고서 및 2023년 자치회관 연간계획 미협의
2	2024년	보고 완료	2024년 자치회관 연간계획 미협의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◆◆동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◆◆동장은

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기 바라며, 자치회관 운영 보고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·감독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